

이 보도자료는 2024. 4. 1. 10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보도자료

인천지검 전문공보관  
전화 032-860-4340

2024. 4. 1.(월)

[주책임자]  
인천지검 국제부장  
정유선 (032-860-4913)  
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 
염승열 (032-722-4671)

## 77억원 상당 면세 양주·담배 밀수입 일당 5명 기소(4명 구속)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(부장검사 정유선), 인천공항본부세관(세관장 김종호)은 면세 담배 70만 갑(37억 6천만원 상당), 면세 양주 1,110병(3억 6천만원 상당)을 '밀수입'하고, 면세 담배 40만 갑(35억 8천만원 상당) '밀수입을 예비'한 총 77억원 상당 면세품 밀수입 일당 5명을 기소하였습니다.  
(2. 23. 3명 구속기소, 3. 29. 1명 구속, 1명 불구속 기소)

● 범인들은 관세 없이 밀수입한 면세품을 높은 마진에 되팔아 수익을 얻고자,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하여 반송수출\*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한 후,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\*\*와 바꿔치기한 다음, 가짜 박스를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,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하였습니다.

\* 반송수출 : 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면세품을 외국으로 판매할 경우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

\*\* 가짜 수출용 박스에는 생수나 가짜 담배상자(담배 대신 골판지로 채움)를 집어넣어 면세품 수출용 박스와 비슷하게 모양 및 무게를 맞춤

● 인천지검은 인천공항세관이 확보한 창고 CCTV 영상을 화질개선하여 '바꿔치기' 장면을 명확히 확인하고 3명을 직접 구속하였으며,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지검과 공조하여 주범 1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체계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였습니다.

- 또한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,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으며,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 4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여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였습니다.

● 인천지검·인천공항세관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,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범죄를 엄단하고 예방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.

# 1

##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 범행 개요도



○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는 [별첨 1] 참조

# 2

## 수사 경과

- '23. 5. 인천공항세관, B, C, D 불구속 송치
- '23. 5. ~ '24. 1. 인천지검, 창고 CCTV 영상 화질개선 등 보완수사
- '24. 2. 5. 인천지검, B, C, D 직접 구속
- '24. 2. 23. B, C, D 구속 기소
- '24. 2. 26. 인천지검, B, C, D 보유재산 추정보전
- '24. 3. 11. ~ 13. 인천공항세관, A 체포 및 구속
- '24. 3. 27. 인천지검, A, E 범인도피 및 교사 입건
- '24. 3. 29. A 구속 기소, E 불구속 기소

### 1. 반송수출 면세품의 '바꿔치기' 수법 밀수입 범행 전모 확인

- 피고인들은 면세점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면세 담배와 양주를 대리구매한 후, 정당한 관세를 내지 않고 밀수입하고, 높은 마진을 붙여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김으로써 많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.
- 피고인들은 반송수출 면세품이 공항 또는 항만 화물터미널로 출고되는 과정에서, 출항 일정 등의 사유로 중간 창고를 경유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, B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면세품을 바꿔치기하여 빼돌렸습니다.
- 피고인들은 '22년 면세품을 생수로 바꿔치기한 범행이 단속되어 수사 중임에도 오히려 세관의 감시를 더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바꿔치기용 가짜 담배상자까지 제작하여 '23년 범행에 나아갔습니다.
- 검찰은 세관이 확보한 창고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여 '바꿔치기'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, 세관은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바꿔치기용 가짜 담배 상자를 확보하는 등 피고인들의 지능적·조직적 수법을 규명하였습니다.

### 2. 사법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, 실체를 규명하고 범인도피 사범까지 엄단

- 최초 적발된 B, C, D는 사전에 모의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주범 A의 존재를 함구하는 것은 물론,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.
- 심지어 주범 A는 세관 수사망이 좁혀오자 아무런 관련이 없는 E를 소위 '바지사장'으로 섭외하여, 주범 행세를 하면서 세관에 허위 자백하도록 매수하였고, A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E는 세관에 출석하여 허위 자백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였습니다.
- 피고인들의 적극적·지속적 사법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, CCTV 영상, 통화 내역,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밀수입 일당 4명을 구속하고, A와 E의 범인도피 사실까지 밝혀내 기소하였습니다.

### 3. 밀수품 압수, 피고인들 보유재산 추정보전 등 범죄수익 박탈

- 인천공항세관은 적발된 밀수품을 신속히 봉인 조치하고, 이미 반입된 밀수품의 동선을 추적하여 위치를 특정하는 등 면밀한 대응으로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,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하였습니다.
- 인천지검은 밀수입 일당 소유 자동차 7대를 비롯하여 1억 4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정보전하는 등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으로 거둔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추가 범행의 유인을 차단하였습니다.

## 4

### 향후 계획

- 밀수입 등 관세범죄는 통관절차를 무력화하고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서, 앞으로도 세관과 검찰이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공조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.
-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으로서, 관세범죄를 엄단하고 예방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통관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※ [별첨 1]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

[별첨 2] 관련 사진 자료

[별첨 3] 관련 영상 자료

[별첨 1]

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역할	공소사실 요지	처분
1	A (한국계 중국인)	면세품 구입 자금 조달, 밀수입 면세품 처분	'22. 6. ~ '23. 10. 총 5회에 걸쳐 국산 및 중국산 면세 담배 70만 갑(37억 6천만원 상당), 면세 양주 1,110병(3억 6천만원 상당) 밀수입, 중국산 면세 담배 40만 갑(35억 8천만원 상당) 밀수입 예비 [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, 관세법위반]  '23. 11. ~ 12. E에게 4천만원을 주고 E로 하여금 밀수입 사건의 주범 행세를 하며 인천공항세관에 거짓 자수서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함 [범인도피교사]	'24. 3. 29. 구속 기소
2	B (한국인)	본인 운영 창고 에서 면세품 '바뀌치기' 및 밀반입 총괄	'22. 6. ~ '23. 10. 총 5회에 걸쳐 국산 및 중국산 면세 담배 70만 갑(37억 6천만원 상당), 면세 양주 1,110병(3억 6천만원 상당) 밀수입, 중국산 면세 담배 40만 갑(35억 8천만원 상당) 밀수입 예비 [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, 관세법위반]	'24. 2. 23. 구속 기소
3	C (한국인)	구입한 면세품을 면세점 창고에서 B가 운영하는 창고까지 운송	'22. 6. ~ 7. 총 3회에 걸쳐 국산 면세 담배 40만 갑(16억 2천만원 상당), 면세 양주 1,110병(3억 6천만원 상당) 밀수입 [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, 관세 법위반]	'24. 2. 23. 구속 기소
4	D (한국계 중국인)	B의 직원, 면세품 '바뀌치기' 및 밀반입 실무 담당	'22. 6. ~ 7. 총 3회에 걸쳐 국산 면세 담배 40만 갑(16억 2천만원 상당), 면세 양주 1,110병(3억 6천만원 상당) 밀수입 [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, 관세 법위반]	'24. 2. 23. 구속 기소
5	E (한국인)	A가 매수한 소위 '바지사장'	'23. 11. ~ 12. A로부터 4천만원을 받고, A 대신 밀수입 사건의 주범 행세를 하며 인천공항세관에 거짓 자수서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을 함 [범인도피]	'24. 3. 29. 불구속 기소



[별첨 2]

관련 사진 자료



담배 대신 골판지를 채운 가짜 담배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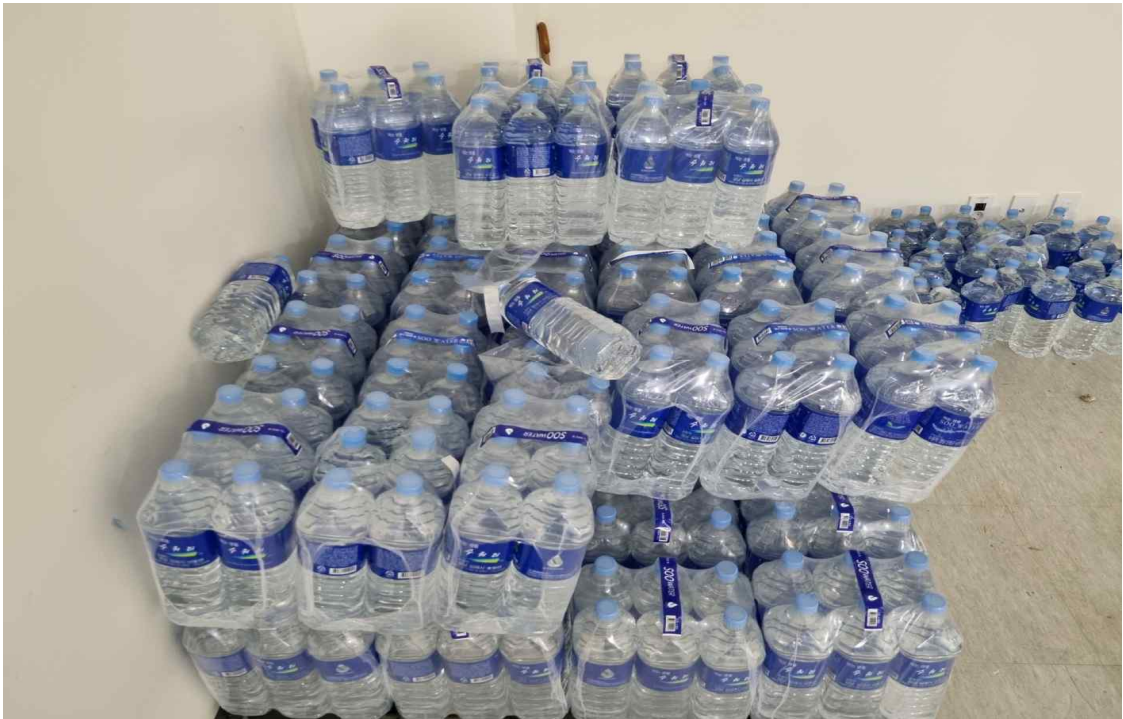


압수된 가짜 담배상자 70만 갑

관련 사진 자료



밀수입하여 숨겨놓은 면세 중국산 담배 압수 현장



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바꿔치기용 생수



[별첨 3]

관련 영상 자료



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



밀수입한 면세 중국산 담배 압수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